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9
------------	-----

발의연월일 : 2016. 7. 1.

발의자 : 이종배 · 정우택 · 김석기

박인숙 · 정유섭 · 이우현

곽상도 · 김광림 · 주호영

배덕광 · 경대수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한자어 표현은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고,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모습이라 할 것임.

이에 일본식 한자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식 한자어인 ‘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가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7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생 략)</p> <p>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u>당해</u>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제17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 <u>해당</u> -----</p> <p>-----</p> <p>-----.</p>